

부천시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0. 11. 4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0. 11. 4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- 제82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(2000. 11. 10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중육)

개정이유

-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시행으로 전자공인의 사용이 필요함에 따라 부천시공인조례 중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의 전자입력 및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로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3조의2제2·3항)
- 전자공인 재등록시 기존 공인의 삭제 및 재입력에 관한 사항(안 제6조제3항)
- 전자공인 사용시 공인업무담당과에 등록하여 컴퓨터파일, 대장작성관리 요령 및 위조·부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신설(안 제6조의2)
- 공인의 전자입력시 공고 제외에 관한 사항(안 제9조제1항)

3. 질의답변 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전자공인을 사용할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데 안전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정보관리과에서 컴퓨터 서버장치에 보안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공인관리는 총무과 업무이지만 인영파일 관리는 정보관리과 소관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제6조의2제3항의 공인업무 담당과장은 누구인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업무 해당과장임

4. 토론요지

- 가. 찬성토론
 - 없음
- 나. 반대토론

없 음

5. 심사결과

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전자공인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자공인 관리를 잘 하도록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없 음

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400호
의결년월일	2000. 11. 15 (제82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4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제안이유

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시행으로 전자공인의 사용이 필요함에 따라 부천시공인 조례 중 관련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의 전자입력 및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로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3조의2제2·3항)
- 전자공인 재등록시 기존 공인의 삭제 및 재입력에 관한 사항(안 제6조제3항)
- 전자공인 사용시 공인업무담당과에 등록하여 컴퓨터파일, 대장작성관리 요령 및 위조·부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신설(안 제6조의2)
- 공인의 전자입력시 공고 제외에 관한 사항(안 제9조제1항)

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시장·구청장 및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 - ③제2항의 전자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적인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
-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③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) ①시장·구청장 및 동장은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담당과에 등록(제등록을 포함한다)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.

③시·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,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공인”을 “공인(전자공인을 제외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부천시공인조례 제3조의2(특수공인) (생략) <u>(신설)</u>	부천시공인조례 제3조의2(특수공인) ①(현행과 같음) ②시장·구청장 및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 ③제2항의 전자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적인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.
제6조(공인의 신조·개각) ①~②(생략) <u>(신설)</u>	제6조(공인의 신조·개각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제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종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<u>(신설)</u>	제6조의2(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) ①시장·구청장 및 동장은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담당과에 등록(제등록을 포함한다)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	<p>② <u>시장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시·구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전자공인을 등록 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 장의 해당란에 찍고,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 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 다.</u></p>
제9조(공고) ① <u>공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폐인하였 을 때에는 이를 도보·시보 또는 회보에 공고하 여야 한다.</u>	제9조(공고) ① <u>공인(전자공인을 제외한다).....</u>
②(생략)	②(현행과 같음)

(별지 제2호의2서식)

전자공인등록대장

공인명							
종류		<input type="checkbox"/> 정인	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인	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인	
등록 · 재등록	전자공인인영	등록일(재등록일) :		년	월	일	
		최초사용일 :		년	월	일	
	전자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관인인영	등록(재등록)사유					
	관리부서						
	비고						
폐기	전자공인 인영	등록일(재등록일) :		년	월	일	
		최초사용일 :		년	월	일	
		폐기사유					
		폐기자	소속 :	직급 :	성명 :		
	비고						

비고 : 전자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,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.